

이사물품 통관안내

1. 이사물품의 정의

외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했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 사용하던 물품으로 제세 면제

구 분	해외거주기간(본인)	해외거주기간(가족동반)	필요서류
해외거주 이사자	1년이상	6개월이상	출입국사실증명서
국내거주예정 이사자	1년이상 거주예정	6개월이상 거주예정	국내거주증명서
해외거주 단기체류자	3월~1년	3월~6월	출입국사실증명서
국내거주예정 단기체류자	3월~1년 거주예정	3월~6월 거주예정	국내거주증명서
해외거주영주권자			영주권포기증서

** 국내거주증명서 :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,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

2. 이사물품 인정범위

- 거주이전사유, 거주기간, 직업, 가족수, 물품성질, 수량, 용도등을 고려하여 판단
 - 이사자와 달리 단기체류자는 통상적인 개인용품에 한하고, 거주지 임대계약서 제출
- 필수 과세대상물품
 - 자동차(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면세)
 - ** 이사물품인정 자동차요건 : 외국에서 3개월이상 사용(등록증명서로 확인)
 -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이상 신변장식품
 - 최종 입국전 3개월미만 사용한 물품
 -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: 별첨참조

3. 이사물품 반입기간

- 이사자 최종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
 - ** 천재지변, 운항선사의 부도등으로 기간내 반입이 불가했거나, 출입국불가 사유 존재등
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

4. 불인정 이사물품(과세대상)의 과세가격

-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: 신품가격의 80%
-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: 신품가격의 60%
-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, 1년 미만인 경우: 신품가격의 40%
-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: 신품가격의 20%

5. 통관시 필수 제출서류

- 디테일포장명세서, 이사물품반입내역서(서식별첨), 출입국사실증명서(국내거주증명서),
자동차통관시(등록증명서), 휴대반입신고서류(휴대반입물품이 있는 경우) 등

6. 이사물품 통관지세관

- 서울세관(경인항), 인천세관, 용당세관, 대전세관에 한함

첨부 : 1.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
2.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서식